#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9. 27.)

**제 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본교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정보공개의 원칙)** 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정보의 주요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4조(비공개대상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 5조(정보공개의 절차)** ① 청구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대상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처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주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장은 관계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한다.

**제 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제 8조(정보공개의 제한)**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사본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9조(위원회)**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기획예산실장은 위원 겸 간사가 되고, 업무담당자가 서기가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자로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무부서의 장이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그 밖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청구인의 의무)** ① 청구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취득한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학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본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전주대학교 정보공개 청구서(제5조 관련)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접수일자 | | | ※ 접수번호 | |
|---|---|---|---|---|
| 청구인 | 이 름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소 속 | | | |
| 희망하는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용 □ 복제물 □ 기타( ) | | | |
| 정보내용 | | | | |
|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청구인 본인 법률상이익(법적이해관계)과 무관한 청구는 공개 불가함] | | | |

전주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2. 서약서

---

접 수 증

| ※ 접수번호 | | | 청구인 이름 | |
|---|---|---|---|---|
| 접수자 | 직 급 | | 이 름 |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대 학 교**

[별지 제2호 서식]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제6조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 | | | |
|---|---|---|---|
| 정보 내용 | | | |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 당초 결정기한 | |
| 연장 이유 | | | |
| 연장결정기한 | | | |
| 기타 안내사항 | | | |

전주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수　　신 :

<table>
<tr><td>접수일자</td><td colspan="2"></td><td>접수번호</td><td></td></tr>
<tr><td>청구정보내용</td><td colspan="4"></td></tr>
<tr><td>공개내용</td><td colspan="4"></td></tr>
<tr><td>비공개(전부<br>또는 일부)사유</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공개방법</td><td>직접공개</td><td colspan="3">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br>복제물 □ 기타(　)</td></tr>
<tr><td>우송공개</td><td colspan="3">사본.출력물 □ 복제물 □ 기타(　)</td></tr>
<tr><td>공개일시</td><td colspan="2"></td><td>공개장소</td><td></td></tr>
<tr><td>수수료(A)</td><td colspan="2">우편요금(B)</td><td>수수료감면액(C)</td><td>계(A+B-C)</td></tr>
<tr><td>원</td><td colspan="2">원</td><td>원</td><td>원</td></tr>
</table>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전주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

*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11조 관련)

<table>
<tr><td colspan="2">접 수 일 자</td><td></td><td>접 수 번 호</td><td></td></tr>
<tr><td rowspan="2">이 의<br>신 청 인</td><td>이 름</td><td></td><td>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공개 또는<br>비공개 결정내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통지서 수령<br>유무</td><td colspan="3">□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br><br>□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전주대학교정보공개에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의 의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td></tr>
<tr><td colspan="2">이의신청의 취지 및<br>이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전주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하여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br><br>년 월 일<br><br>이의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br><br>전주대학교 총장 귀하</td></tr>
</table>